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2/1/5 통권 1552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직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변화를 읽는다(1)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과 DCF 평가방법)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부담부중여의 양도시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 성공한 사업가나 부유층의 현금·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금액의 약 50%는 결국 국가로 귀속된다 >

이익, 소득, 재산원천	비용, 원가, 소득공제, 각종 공제액	이익, 재산규모별 적용세율(1.1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총매출에서 대응비용 제외 : 사업주 급여는 차감 안됨 종업원 근로소득에서는 약 2-3천만원 소득공제	누진세율 6%-45%(5억 초과 42%, 10억 초과부터는 45% 적용) +건강보험료 6.67%
법인의 대표 근로소득 차감 후 이익의 법인세	① 법인의 원재료, 제조·생산원가, 급여, 판관비는 손금산입 ② 경영자 근로소득과세(6~45%) 차감 후 이익의 10~20% 법인세율	법인세 20% + 배당종합소득세율 약 30% = 합 50%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소득지급시 원천세율 15.4% 적용 후 종합소득 합산	한계세율 35% 이상 - 14% = 추가 21% 이상 납부 + 건보료 등
부동산의 보유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년 0.5%-1% 내외 납부
부동산의 양도세금	양도가액 - 취득원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익의 6-45% : 1.5억 초과부터 38%, 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10억 초과 45%
재산의 증여세	10년 단위 배우자공제 6억, 자녀 5천(2천만원)	공제액 차감 후 1억×10%, 초과 4억×20%, 초과 5억×30%, 초과 20억×40%, 30억 초과 50%
사망 관련 상속세	사망자의 전재산 - 자녀공제 5억 - 배우자공제(5~30억)	대부분 10-15억원 공제 후 상속재산×10%-30억 초과 50%
총괄판단	· 소득·이익세금은 10억 초과부터는 49.5% · 증여·상속재산은 10억 초과부터 40%	· 건보료 포함시 50% 이상 · 차감 후 30억 초과액부터 50%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52호 / 주간 1호

2022. 1. 5.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일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성공한 사업가나 부유층의 현금·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금액의 약 50%는 결국 국가로 귀속된다	표지
긴급시사해설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과 DCF 평가방법)	2
CEO에세이	CEO는 변화를 읽는다(1)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서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6
	- 부가세 신고 계산서 문의	7
	- 법인 주택매각 부가가치세 대상 - 자기주식 처리방법 문의	
눈에 맞는 절세미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절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2022년 주목해야 할 연금 관련 제도 변화	10
	- 2021년 종합소득세율	11
직장인 Survival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10가지 방법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금융세제과-84, 2021.03.08)	13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법인-1295, 2021.06.29)	14
세정뉴스와 해설	1200만원 기부한 경우 60만원 더 공제해준다	15
마케팅 Tax consulting	부담부증여의 양도시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함	13
세무정보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16
노무정보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4

#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방법 (상속 · 증여세법과 DCF 평가방법)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기업가치 평가방법, 적용요점, 판단방법	근거예규
DCF 평가법	미래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적용 : 미래 5년의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률, 위험이익률 적용에 따라 천차만별 가격임	한공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국제회계기준 1113호
상증법 일반적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60% + 주당 순자산가치 × 40% ≥ 순자산가치 × 80% (순손익 : 세무상 계산, 순자산가치 : 부동산은 기준시가, 공시가 등 법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부동산가액 50% 이상)	1주당 순손익가치 × 40% + 주당순자산가치 × 60% (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 × 80%를 최하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부동산 80% 이상 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 × 100% (부동산 등은 모두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
기타 특수 경우	청산법인, 휴 · 폐업 법인, 3년 미만 법인, 주식등 가액이 80% 이상 등은 주당순자산가액 × 100%(공시가로 계산)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부동산 가액의 판단기준	상기에서 부동산가액이 기업 총자산의 50% 이상, 80% 이상 여부는 모두 부동산의 공시지가·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판단하며, 최종가치계산에서도 모두 공시·기준시가로 계산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기업가치평가지 모든 자산·부채·손익은 세무상 평가액으로 하며 토지건물은 공시·기준시가와 장부반영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양도재산46014-188, 2001.2.22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적용방법]

[양도, 재산46014-188, 2001.02.22]

**【답변사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특정주식"이라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질의서상 2000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상장·비상장주식의 세율(10%,20%)을 적용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 특정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CEO는 변화를 읽는다(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세상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1만년의 농경생활에서 2-300년의 산업사회로 태풍을 맞은 듯 변했었다. 또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자체를 흔들 듯 충격적으로 반세기의 디지털 사회로 급변했다. 그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 “몸부림치듯 변화 발전하여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란 후라이가 될 뿐이다.”

변화를 강조한 잔인하고도 무서운 메타포(metaphor)다. CEO는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키 위해 우선 변하는 세상을 읽어야 한다. CEO는 우선 시장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읽는 게 중요하다.

## 모든 시장은 왕왕 공급 과잉이다.

기술의 공유와 정보의 신속성으로 생산이 넘치는 시대에 진입했다. 재화의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인 시대다. 시계점포를 지나치면서 저 많은 시계가 팔릴지 괜히 걱정된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넘쳐나는 것이 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비중도 생산관리보다 독자적인 차별화된 앞선 기술개발로 바뀌었다. 또 국경을 넘어 공개거래되어 풍부한 자금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요체는 회계와 세무관리도 소홀할 수 없다. 하지만 자금조달 전략 즉 자본의 디자인이 중요해졌다.

지구촌 어디를 가나 사람이 넘쳐난다. 그러나 마땅하게 쓸 인제는 흔치 않은 패러독스가 공존한다. 그래서 비싼 사람은 더 비싸지고 싼 사람은 더욱 싼 사람으로 양극화되었다. 그래서 조직을 잘 디자인하여 사람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급과잉시장에서는 보다 정교한 원투원(one to one)마케팅이 중요해졌다. 상품을 밀어내기만 하면 팔리던 푸시마케

팅(Push Marketing)에서 소비자 기호가 좌우하는 풀마케팅(Pull Marketing)으로 바뀌었다. 세계시장에 반도체 등락이 좋은 예다. 생산자 마인드보다 소비자 마인드 또는 유통 권력이 중요해졌다. OEM보다 Brand가 힘을 누린다. 나이키는 브랜드만 보유관리하고 세계도처에 생산공장을 거느리고 있다. 가격에서 품질, 품질에서 이미지 경영이 중요해졌다. 피라미드 조직은 슬림화되고 네트워크 조직이 중요해졌다.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변했다

일테면 팬츠(PANTS)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Personality, Amusement, Naturalism, Trans-Border 그리고 Service-Based의 이니셜이다.

Personality. 소비자는 개성화하고 있다. 보수적인 대기업의 직원들조차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티셔츠에 반바지로 출근한다. 우유와 오렌지쥬스 대신 카페에서 커스텀 음료를 선택한다.

Amusement. 실용성보다 즐거움을 추구한다. 해야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세상이다.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기업. 오락산업 넓게는 문화산업인 CT(Culture Tech), 생명공학 BT(Bio-Tech), 정보통신기술IT, 환경기술ET(Environment Tech), 나노기술(Nano Tech)등이 미래의 열쇠다.

Naturalism. 자연주의를 추구한다. 합성소재 제품들이 점차 사라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종이빨대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Trans-Border. 경계가 허물어졌다. 국경이 무너져 글로벌 경제라고 한다. 자본, 사람, 소비행태에 국경이 없어졌다. 나이 경계도 없어졌다. 성별의 구분도 없어졌다.

Service-Based. 제품보다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같은 값이면 아니 조금 비싸도 A/S가 좋아야 사고 팔린다. 자동차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다. 밤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성업중이다. 그것은 밥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이란 서비스를 파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이제 고객 니즈(Needs)보다 각각의 다양한 소망을 파악해야 할 때다. 허를 만족하는 과자보다 칼로리가 적은 다이어트 과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

##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서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서 운반자의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업체에서는 보상은 입금해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A** 제품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금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

## 부가세 신고 계산서 문의

**Q** 업체에서 전자계산서를 0원으로 발행을 받았습니다.  
0원이어서 마이너스로 취소하는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에 발행 건수만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거래 상대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0원이라면 잘못된 세금계산서일 확률이 높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실확인하시고 잘못 발급된 것이면 취소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 주택매각 부가가치세 대상

**Q** 저희는 법인으로 기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하러 합니다.

(\*) 매각 부동산 대상

가. 기존 임대자산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나. 전용면적 : 69.68m<sup>2</sup>

다. 매수인 :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예정

라. 시세차이로 매각이익 발생

1.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 국민주택규모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서 배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세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드립니다.

- 매수인이 인수한 오피스텔을 사용목적(사업용으로 사용, 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라 부가세 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 법인세 신고 납부 시 시세차익에 대한 초과분에 이율의 적용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신 부탁드립니다.

A

1. 귀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2.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경우만 추가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자기주식 처리방법 문의

Q

자기주식이 계속 마이너스 부인상태인데 직원들 우선주 주식인수해서라면, 자기주식을 결국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대로 부의상태로 놔둬도 되는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A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다른 거래가 있으면 해당 거래로 처리하면 되나, 특별한 거래가 없는 상태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실제의 상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대금 청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지만, 대금청구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 및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

세금계산서의 합법적인 선발급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이 실제 공급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이 인정되며,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니게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대금 지급없이 세금계산서 선발급후 7일내 대금받는 경우도 가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선발급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같음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대금지급이 7일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2022년 주목해야 할 연금 관련 제도 변화

2월 18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기간 단축 20년 → 10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퇴직금 IRP 이체 의무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 예정 연금소득 반영비율 상향(30% → 50%) 직장인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강화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12월 31일	50세 이상자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일몰

### 화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
- 30억원



## 2021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8800만원 이하	24%	5,200,000
8800만~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000만~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① 신용카드 공제 확대
  - 작년 대비 사용금액 5% 초과 시 증가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연봉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 ②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1000만원 이하 : 15% → 20%
  - 1000만원 초과분 : 30% → 35%
- ③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렌터카 등 상품 대여업 종사자,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적용
- ④ 분양권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대상 분양가 4억원 → 5억원 상향
- ⑤ 월세 세액공제(12%) 대상 확대
  -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⑥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한 연장
  - 2022년까지 연장
  -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⑦ 공무원 포상금 비과세
  - 연 240만원 이하



##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10가지 방법

1. 스몰토크를 준비한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재치 또한 능력이다. 신문을 꼼꼼히 훑어 대화의 재료를 풍부하게 하자.
2. 내가 하고픈 것은 나중에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도록 하자.
3. 당당하게 SOS를!  
필요할 땐 당당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4.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5. 강요는 NO  
나와 다르다고 불편해하고 그의 생각을 바꾸려 하면 누구든 좋아할 수 없다.
6. 고무줄처럼 말하기  
상황에 따라 말을 늘였다 줄였다 할 줄 알아야 한다.
7. 눈 쳐다보기  
상대방의 표정변화나 제스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8. 걸모습을 정돈하기  
분위기에 맞는 옷차림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다.
9. 거절에도 테크닉이 필요하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 궁시령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다.  
거절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10.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만 꼬집기  
이런저런 일들을 장황하게 추궁하면 반발만 생긴다.

# 최신 판례 예규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금융세제과-84, 2021.03.08

## 질 의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 회 신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부담부증여의 양도시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서면법령재산-2718, 2021.05.17

## 질 의

- 소득령 § 155(20)의 거주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부담부증여 전과 후를 통산하여 소득령 § 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239, 2021.06.29

## 질 의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법인-1295, 2021.06.29

### 질 의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시행사로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를 이전받을 예정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10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함
- 시행사의 하자담보책임 종료\*시 향후 건축물의 하자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사로부터 일정액의 합의금(하자보증금 성격)을 수령함

###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정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

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4455, 2021.06.30

### 질 의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제9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200만원 기부한 경우 60만원 더 공제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신청하는 대표적 개별 공제 중 하나이며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늘어났는데,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체 기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35%,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액은 27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210만원이기에 올해는 60만원의 추가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35.0%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로 동일하지만, 전체 기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0만원(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 공제액은 550만원이다.

기부금 1200만원 중 실질 공제율은 22.5%(270만원/1200만원)이지만, 기부금 2000만원의 공제율은 27.5%(55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억 기부의 경우 실질 공제율은 33.5%로 올라간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2단계 누진공제 형태에 따라 실질 공제율은 35.0%쪽으로 이동하게 되며(완전히 35.0%에 붙지는 않음) 저액공제가 주류를 이루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최상단의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체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상증세 유예로 착각하면 가산세 폭탄

올해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3년도로 유예됐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예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록이 된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 국세청, 내년 상속증여한 가상자산 과세... 새 평가방법 고시

국세청이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인지 고시 거래소 외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고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이라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 조회/발급 이하 기타조회 항목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2021. 12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 22. 1. 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I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받  
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  
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  
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2 서비스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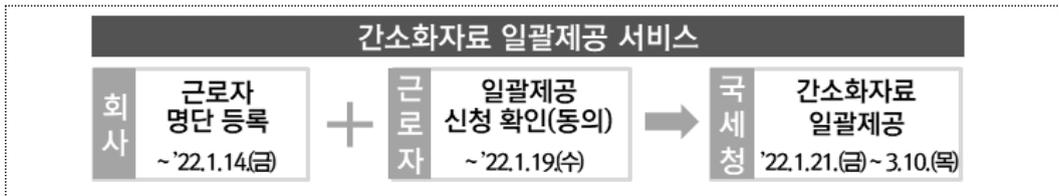
-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
    -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함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회 사]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 회사는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 등록 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입력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 회사는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연말정산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바랍니다.

## 3 근로자의 신청 확인(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 신청 확인(동의)
  -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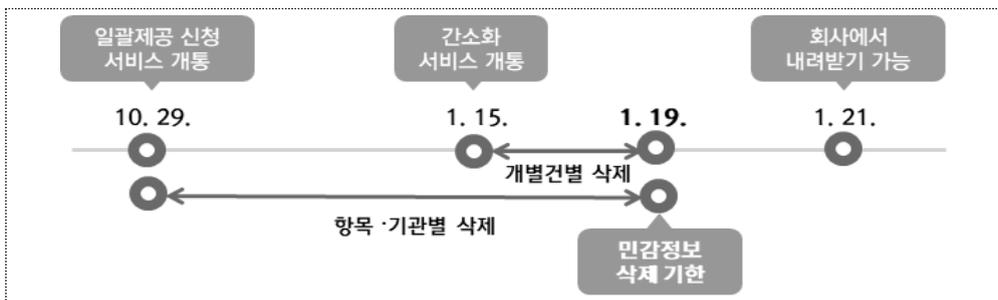
서비스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 회사는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감정보 삭제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합니다.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예: 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 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 4 회사의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 여 근로자 용량)로 제공합니다.
  -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II

## 근로소득 연말정산

### 1 연말정산 전 확인할 사항

-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7.1. 개통)과 연계
- 주요 개정 세법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①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② 등이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 (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 20년에 2,000만 원, ' 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임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 25% = 1,750만 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 [㉞ 일반 소득공제 + ㉟ 추가 소득공제]

㉞ [(3,500만 원 - 1,750만 원) × 15% + (3,500만 원 - 2,000만 원 × 105%) × 10%] = 403만 원(한도300만 원)

㉟ Min[한도초과액(403만 원 - 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100만 원

3) 개정 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

☞ (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이(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임

1) 세액공제금액:  $[1,000만 원 \times 20\% + (1,200만 원 - 1,000만 원) \times 35\%] = 270만 원$

2) 개정 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 원 → (개정후) 270만 원]

\* 보다 구체적인 개정세법과 계산내역은 【참고4,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과다공제 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6】

유형	과다공제 사례
◇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한 사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의 상담도우미,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2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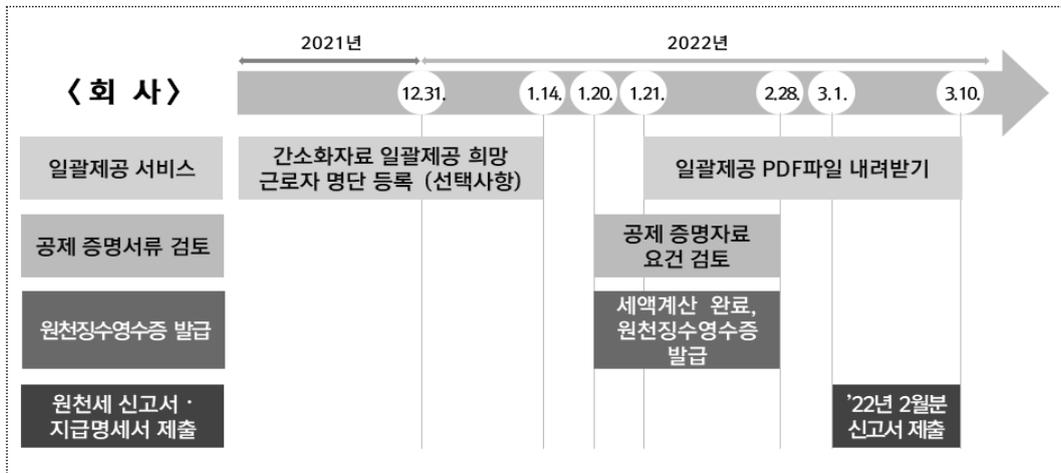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①점자파일(.bri)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② 점자로 확인하거나 ③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 III 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선택	연말정산 선택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2월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으며,
  -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 회사는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

구분	내용	기존	개선
근로자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직접 제출	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 제출
회사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PC만 가능	PC·모바일 가능

-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1 -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 영수증 발급기관은 기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공제증명자료 제출



-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오류 내용 확인
  - 제출대상이 100건, 오류건수 10건인 경우 오류 없는 90건은 정상 제출됨
  -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고 2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Ⅰ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Ⅰ

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li> <li>-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li> </ul> </li> <li>○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li>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li> <li>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li> </ul> </li> <li>-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li>1) (좌 동)</li> <li>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동직 등 추가</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 (적용시기) '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 (적용시기) '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li> <li>○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li> <li>②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li> <li>③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p>

- (적용시기) 주택분양권(②)은 ' 21. 1. 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 21. 2. 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소득세법 §59의4 ⑧,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기부금 × 15%(1천만 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 원 초과분 35%)

- (적용시기) '21. 1. 1. ~ ' 21.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5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li> <li>○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 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Min(총급여 × 20%, 300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1.2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 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li> <li>*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li> <li>○ (적용기한) 2022. 12. 31.</li> </ul>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p><input type="checkbox"/>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p>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li> <li>* ①~④ 금액의 합계액</li> <li>○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li> <li>○ (좌 동)</li> </ul>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3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기부금 공제율 확대 계산 사례

#### ①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올해('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

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000만 원 ×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 (㉞ + ㉟)

㉞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 원 - 1,750만 원) \times 15\% + (3,500만 원 - 2,000만 원 \times 105\%) \times 10\% = 263만 원 + 140만 원 = 403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㉟ 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 - 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 - 1,750만 원) × 15%

②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 (1천만 원 초과 30%)에서 20% (35%)로 5%p 확대

▷ 총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 × 20% + (1,200만 원 - 1,000만 원) × 35%] = 270만 원

[개정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 원\* → (개정후) 270만 원]

\* [1,000만 원 × 15% + (1,200만 원 - 1,000만 원) × 30%]

## 참고 4 - 과다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 1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①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⑤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⑥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①~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 2 과다공제 계산 사례

사례	<p>총급여액 1.2억 원인 근로자가 양도소득 3천만 원인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 및 특별공제(보험료 1백만 원, 신용카드 10백만 원, 기부금 10백만 원)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 (가정) 연말정산(3. 10.) 종료 200일 후 원천세 고지</p>
----	--

◇ 추가 납부세액: 약 303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

〈 소득·세액공제 명세〉

(만 원)

관계	기본공제	경로우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매월 균등)	기부금 (종교단체)
본인	○	-	-	1,500	-	2,000	-
모친(75세)	○	○	100	-	-	1,000	1,000
자녀	○	-	-	-	300	600	-

〈 추가 고지세액 계산내역 〉

(만 원)

세액계산 항목	㉠ 당초 신고	㉡ 수정 신고	㉢ 차이(㉡ - ㉠)
① 총급여액	12,000	12,000	-
② 근로소득공제	1,515	1,515	-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10,485	10,485	-
④ 기본공제	450	300	△150
⑤ 추가공제	100	-	△100
⑥ 국민연금 공제1)	540	540	-
⑦ 건강보험료 공제2)	396	396	-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	90	-	△90
⑨ 과세표준 [③-(④~⑧)]	8,909	9,249	340
⑩ 산출세액	1628	1,747	119
⑪ 근로소득세액공제	50	50	-
⑫ 자녀세액공제	15	15	-
⑬ 보험료세액공제	12	-	△12
⑭ 의료비세액공제	171	171	-
⑮ 교육비세액공제	45	45	-
⑯ 기부금세액공제	150	-	△150
⑰ 결정세액 [⑩-(⑪~⑯)]	1,185	1,466	281
⑱ 가산세	-	27	22
⑲ 추가 납부세액 (⑰+⑱)	-	-	303

- 1) 국민연금 = 총급여액 × 4.5%,                      2) 건강보험료 = 총급여액 × 3.3%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내역
  - ◇ 최저 사용금액: 12,000만 원 × 25% = 3,000만 원
  - ◇ 당초신고 신용카드 공제: (3,600만 원 - 3,000만 원) × 15% = 90만 원 (한도 250만 원)
  - ◇ 수정신고 신용카드 공제: 모친 사용분 1,000만 원 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2,6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3,000만 원)에 미달하여 소득공제 대상금액 없음

참고 5 - 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공제액(2,000만 원 한도)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 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 만 원
7,000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 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 원(50 세 이상자는 600만 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	



##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 12. 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 12. 31. 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참고 6 - 주요 문답자료(FAQ)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 연말정산 방법 1~2 ]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 인적공제 3~7 ]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6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 소득·세액공제 8~16 ]

###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액공제액: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 × 10%(또는 12%)

###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을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14년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 원	300만 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기 타	500만 원	-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공제 가능
	그 외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12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13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4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5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6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 6. 24.)

## [ 세액감면 17~18 ]

### 1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 (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액감면 한도 : 과세기간별 15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729번) [신청·신고] 홈택스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 18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품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9~20 ]

### 19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본인 현황 조회 → 취소  
 (모바일) 홈택스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 모바일 연말정산 21~23 ]**

**21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 공제항목 선택 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22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 23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 근로자의 기초자료 등록, 공제신고서 취합 및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관리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4~26 ]

### 2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25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는 기타서류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온라인으로 기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과세 27 ]**

27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8~33 ]**

2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9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 30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 31 회사가 등록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32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P 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I-PIN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 33 회사가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로서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일괄제공 PDF파일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회사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도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입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수입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입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 회사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바랍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4일 (금)	12월 27일 (월)	12월 28일 (화)	12월 29일 (수)
미 달 러 (USD)	1187.50	1186.40	1186.20	1186.70
일 본 엔 (JPY)	1037.48	1037.06	1032.60	1033.76
영 국 파 운 드 (GBP)	1592.44	1589.84	1594.61	1594.03
캐 나 다 달 러 (CAD)	927.19	925.72	927.73	925.95
홍 콩 달 러 (HKD)	152.26	152.12	152.10	152.17
위 안 화 (CNH)	186.47	186.00	186.09	186.13
유 로 화 (EUR)	1344.84	1343.06	1343.79	1342.16
호 주 달 러 (AUD)	859.39	858.06	858.75	857.57
싱 가 폴 달 러 (SGD)	874.13	873.03	874.55	876.1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74	282.78	283.58	283.87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2021. 12

- 정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1.1.)

☞ 고용보험기획과(박은정 서기관), 여성고용정책과(윤종호 사무관) 소관

- 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정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이에 더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현행 12개 직종(' 21.7.1.~) 외에도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를 추가하고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 \*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봄
- ② **육아휴직급여 제도개편**
  -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여,
    -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육아휴직급여

-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 아울러,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한다.

\* (상한액)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①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②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③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

⇒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한 육아휴직자는 '22년부터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 적용 →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상자가 ①'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7.1. 및 '22.1.1.)

☞ 고용보험기획과(천춘희 사무관), 산재보상정책과(김영수 사무관) 소관

**① 실업급여 보험료를 조정(시행: '22.7.1.)**

□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2.7.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게 됐다.

\* (근로자) 1000분의 16 → 1000분의 18, (예술인·노무제공자) 1000분의 14 → 1000분의 16

□ 더불어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21.9.1.)

↳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약 2.6조원 절감, ▲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지원('22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추진(11.3.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② 산재 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시행: ' 22.1.1.)**

□ 그간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대해 하청업체 산재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보험료는 하청에 전가되고 사망사고가 많은 대기업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를 할증에 반영하고,

○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직접고용+하청+파견 근로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 은폐 여부 등을 반영, 할인을(산재보험요율의 최대 20%)을 축소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1.1.)**

☞ 산재보상정책과(김영수 사무관) 소관

**①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 대학 실험실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신분의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보수를 받는 학생연구원(약 11만명)이 대상이며,  
 -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0.7%)을 곱하여 산정하며,  
 - 대학연구기관 등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장애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직무분석, 기능향상 훈련 등 직장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애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지급했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긴급히 장례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